

# 표준위원회 규정

제정 2008년 12월 24일

개정 2016년 06월 24일

개정 2023년 07월 29일

## 제 1 장 개요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식방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부식 및 방식산업 기술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기준을 통합, 조화 및 일치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술표준을 제정 보급하기 위한 내부의 위원회와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표준문서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은 부식 및 방식분야의 제품 및 기자재에 관한 대표규격을 말하며,
2. “표준기술”은 부식 및 방식분야의 기술사항을 통일 또는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표준기술, 표준규격을 통틀어 “표준”이라 한다.).
3. “잠정표준”은 표준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표준에 준하여 관리하는 규격과 기술을 말한다.
4. “표준위원회”는 표준의 제·개정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부식방식학회 내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은 부식 방식과 관련된 산업 전반에서 기자재의 구매,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운용방법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2 장 표준의 제·개정

### 제 4 조 (제정 및 개정)

표준의 제·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별표 1).

1. 본 학회 회원은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개정 (안) 및 관련 검토 자료를 표준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표준의 제·개정 요청 시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제·개정 요청서(별표 2)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3. 표준위원장은 회원이 제출한 제·개정안에 대하여 표준화의 필요성 및 작성체계 등을 검토한 후 표준 심의안을 작성하여 표준위원회에 부의한다.
4. 표준위원장은 시급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 내 전문가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제·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5. 본조 1호부터 4호까지의 절차이외에 학회자체의 사업을 통하여 제·개정을 할 수 있다.

### 제 5 조 (제·개정 원칙)

1. “표준규격”은 기자재의 종류·성능·구조·시험방법 등이 기술적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와 표준규격

- 의 호환성·단순성·경제성·최신성 등을 감안하여 제·개정하여야 한다.
2. “표준기술”은 기존의 통일성·합리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제 6 조 (기술표준 작성)

1. 표준은 제7조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되,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것은 KSA-0001(규격서의 서식) 최신판에 따른다.
2. 표준은 성능위주로 작성하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규격의 관련항목을 괄호로 명기할 수 있다.
3. 아래의 표준에 대한 영문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 :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Design)
  - ② 잠정표준 : (Provisional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Design)

### 제 7 조 (표준의 형식)

일반적인 표준문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표지 (표준번호, 표준명 포함) (별표 3)
2. 제·개정 이력현황 (별표 4)
3. 본문
  - ① 적용범위 : 단위 업무의 적용범위를 간략히 기재한다.
  - ② 목적 : 표준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기술한다.
  - ③ 방침 : 필요한 경우 단위업무의 세부방침을 기술한다.
  - ④ 용어정의 : 해석상에 무리가 없는 경우는 생략한다.
  - ⑤ 규격 및 기술절차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⑥ 관련문서 : 해당문서에 관련된 문서명을 기술하고( )에 문서번호를 명시한다.
  - ⑦ 관련서식 : 서식번호, 서식명, 보존년한 등을 기술한다.
4. 첨부자료
  - ① 흐름도 : 해당 표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한다.
  - ② 별표 또는 서식 : 해당 표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된 별표 또는 서식의 견본을 첨부한다.

### 제 8 조 (표준의 운용)

1. 표준위원장은 표준에 대하여 제·개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표준 제·개정 발의자 혹은 학회 내 관련 위원회 혹은 회원 중 전문가 등을 통하여 계속 운영,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2. 다만, 기술여건의 변동이나 본 학회 회원 등으로부터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우선 심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3 장 표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 9 조 (표준위원회 설치)

1. 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표준 제·개정안에 대한 간단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표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 10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식방식분야 기기 및 재료의 종류, 형상, 구조, 성분, 성능
2. 부식방식분야 기기 및 재료의 시험분석과 검사방법
3. 부식방식분야 시설 및 기타 시설의 구조물 설계, 시공, 운영방법
4. 기술용어, 약어, 기호(부호) 및 단위
5. 기타 표준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 11 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 원 장 : 본회 학회장이 지명
  - ②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③ 상임위원 :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④ 전문위원 : 심의 내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간 사 : 사무국 직원 혹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회외부 인사를 참고인 등으로 배석시킬 수 있다.

#### **제 12 조 (전문위원 위촉)**

1. 위원회는 전문분야 기술의 검토와 특별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 내·외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위원회 내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4. 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에게는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비용, 위원회 참석 교통비 및 심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3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부의 안전의 심의
2. 잠정표준의 제정·개폐 및 확인 등에 관한 심의
3. 기타 학회 내에서 본 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 **제 14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5 조 (의안 설명)**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 발의자에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6 조 (공청회 및 공시)**

위원장은 표준의 제·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혹은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공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7 조 (심의 및 시행 절차)**

1. 표준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안) 심의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제11조에 규정하는 총 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선임, 구성 심의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의 안전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별표5 양식)
3. 표준위원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승인을 받으면, 그 실시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행한다.

#### **제 18 조 (표준의 권리귀속)**

심의 제출된 표준의 권리는 본 학회가 가지며, 신청인은 심의요청 시 소정의 권리양도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장 표준의 관리**

#### **제 19 조 (표준의 번호부여)**

1. 표준위원장은 확정된 표준 및 잠정표준 중 표준규격 및 표준기술에 대하여 설비분류 및 타 기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표6-1, 6-2와 같이 정한다.
  - ① 표준규격 : CSSK-G-관리번호 세자리(제개정연도)
  - ② 잠정표준규격 : CSSK-PG-관리번호 세자리(제개정연도)
  - ③ 표준기술 : CSSK-D-관리번호 세자리(제개정연도)
  - ④ 잠정표준기술 : CSSK-PD-관리번호 세자리(제개정연도)
2. DIS, FDIS 등의 표기법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 FDIS-CSSK-PG-0112009, DIS-CSSK-D-0022008
3. 분류체계에 따른 개별 항목 및 부여된 관리사항은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 **제 20 조 (표준서의 관리)**

사무국은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표준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서를 항상 최신의 표준으로 가제 정비하여 표준위원회의 요청과 대외 소요기관 및 개인의 요청 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적용시기)**

표준의 적용 시기는 표준의 확정·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표준에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5 장 표준 활성화 제도**

#### **제 22 조 (표준의 제·개정 대행기관 지정 등)**

표준위원장은 시급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표준의 제·개정 시는 본 학회 임원진과 협의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 23 조 (표준공모제도)**

학회 내 표준 제·개정 촉진제도의 일환으로 학회 내 표준공모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운영방안은 별표 7과 같다.

1. 표준공모는 학회 내 정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 표준공모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제도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 제 6 장 표준의 등록 및 인증

### 제 24 조 (등록)

1. 제정된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9조 ③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한국표준 협회(이하 '협회')에 등록한다. (23.7.29 신설)
2. 소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고시에 따른다. (23.7.29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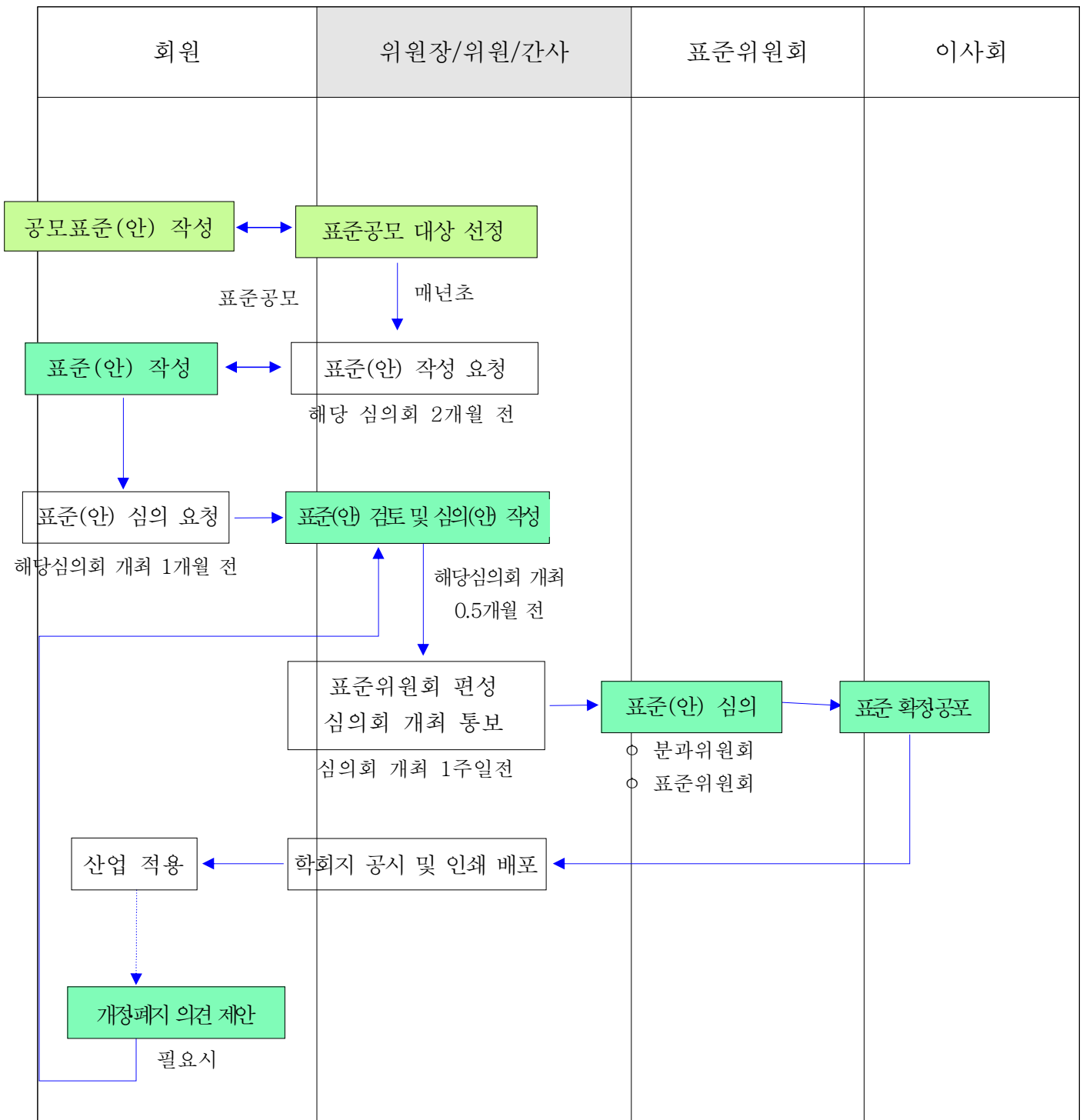
### 제 25 조 (인증)

1. 본 단체표준의 규격을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3.7.29 신설)
2. 표준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CSSK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칙에서 다룬다. (23.7.29 신설)

###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6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2023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 표준 제·개정 요청서

제 목	
제 정 사 유 (개정 사유)	
주 요 내 용	별지사용 가능
예 상 효 과	
적 용 규 격	
관 련 근 거	
표준사용시기	
<p><b>한국부식방식학회장 귀하</b></p> <p style="text-align: center;">별첨의 표준(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 ○ ○ (인)</p> <p>별첨 : 1. 제.개정(안) 2. 제.개정 검토자료</p>	

CSSK-G-001(2008)

토양분위기에서 음극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 표준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 on the Performance of Sacrificial Anodes for Cathodic  
Protection in Soil Environments

2008. 12. 24 한국부식방식학회 표준위원회 심의제정  
approved by Standardization Committee of CSSK





[별표 4]

제·개정 이력 현황			
개정번호	제·개정일	개정쪽	제·개정내용
00	2000.00.00	-	

[별표 5]

# 서면결의서

안 건 : ○  
○  
○

표준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거 위의 안건을 서면결의 코자 하오니, 해당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단	심의의결		비 고
	원안의결	수정의결	
위원장			
위 원			상임위원
위 원			상임위원
위 원			전문위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안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원안의결	별지와 같이 수정	보 류	부 결

년 월 일

표준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6-1]

# 표준규격 (CSSK-G) 분류체계

---

## 1. G 분류기호 및 번호체계

CSSK - G - ○ ○ ○ , 2008  
① ②

- ① : 분류 분야 (1자리수)
- ② : 제정 순서 (2자리수)
- 연도 : 제정 또는 개정연도 표기

## 2. G 분류체계 구분

①분류번호	내 용	비 고
0	공통표준규격	
1	기계분야 기자재규격	
2	전기분야 기자재규격	
3	화학분야 기자재규격	
4	수송분야 기자재규격	
5	건설분야 기자재규격	
6	에너지 및 환경분야 기자재규격	
7	소형시스템규격	
8	대형시스템규격	
9	예비 규격	



## 학회내 표준공모제도 운영방안

---

1. 목적 : 표준(기술표준 및 표준규격)의 제정 촉진

### 2. 학회내 표준공모방안

일정기간내에 학술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표준 대상에 대하여 가능한 공모 접수

### 3. 공모자격

학회내 회원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 4. 심사 및 평가

가. 심사방법

- 표준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나.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점수를 반영한다.

### 5. 공모자에 대한 포상 등

표준공모의 채택 공모자에게는 제안규정 제19조(공모제안)의 포상기준에 의거 포상한다.

### 6. 사후 처리

표준위원장은 표준공모의 채택 표준(안)을 본 규정 정식 절차에 따라 상세 검증후 표준심의를 위하여 표준위원회에 부의한다.